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2026년 8월 24일
2. 제출자: 구미시장
3. 회부일자: 2026년 8월 25일
4. 상정일자: 2026년 9월 2일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II.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설명자: 경제국장 김 영 철

2. 제안이유

가. AI·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산업 환경 변화로 디자인 경쟁력은 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AI 기반 혁신 디자인 기술을 도입하여 상품 기획부터 브랜드, 마케팅까지 전주기 디자인을 통합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 브랜드 디자인 고도화, 디지털 융합 마케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나. 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상품기획 분야에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다)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12조

2) 필요성: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과 기술 융합을 통한 산업 혁신과 구미 소재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다. 위탁 사무 내용: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업무 전반

1) 중소기업 디자인·상품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

2) 전주기 디자인, 브랜드·마케팅 디자인 등 분야별 지원사업 추진

3) 사업 공고,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평가 관리

4) 사업 수행 점검, 컨설팅 및 성과 관리

5) 사업비 집행 관리, 정산 및 결과보고

라.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해당없음

마. 위탁기간: 2027. 3. ~ 12.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500백만원(시비)

(단위: 백만원)

계	사업비	간접비	인건비	비고
500	375	30	95	

사.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 2026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6.8.18.)

아. 위탁구분: 재계약 (수탁기관: (재)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자. 부서의견: 디자인 관련 기업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디자인·상품기획 분야에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12조

나. 예산조치: 2027년도 예산편성

다.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2026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라.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안전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호 규

○ 본 동의안은

- AI·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전반의 기획 및 운영 등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최근 산업 현장에서 디자인 경쟁력이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에 핵심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AI 기반 디자인 기술 도입 및 전주 기적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는 지역 산업 혁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재)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상품기획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위탁 사무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지원 받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V. 토 론 요 지: 생 략

VI.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VII. 심 사 결 과: 원안가결